

FTA 활용 증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01 FTA 활용 목적

'08년부터 무역의존도¹⁾가 100%를 넘나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보화 혁명을 통하여 발전시켜온 ICT능력에 FTA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추가 장착하여 치열한 국제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나가고 있다.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제조업 중심축인 동아시아(동북아와 동남아)와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과 EU를 연결하는 Hub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 마다 국민들의 관심은 교역대상 상품(유체물)에 대한 FTA 적용 품목 및 특혜세율의 수준, 그리고 해당 상품의 원산지기준에 대하여 집중된다. FTA 협정의 특혜세율과 원산지기준을 분석하면 유망산업의 수출증대나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 등 FTA 발효에 따른 경제효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전반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

FTA는 체결국이 국내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실행세율(기본세율, WTO 세율 등)에 예외적으로 FTA 협상에서 약속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당사국의 국민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1) 무역의존도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액과 수입액, 그리고 국외수취요소소득과 국외지급요소소득의 총합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음(통계청, e-나라지표 "무역의존도", 2015.10)

서울의 철폐나 경감을 통한 교역의 활성화는 국경을 초월한 규모의 경제를 확대시키고, 이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고용이 촉진될 수 있다.

또한 종국적으로는 건전한 소비를 진작하게 되어 세수가 확대되는 등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시키게 된다.

FTA를 활용하여 특별히 관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FTA 특혜 상품(원재료)의 수입자가 기존의 거래 보다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거나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수시장에 관련 상품을 공급하게 되면, 국내산업은 가격 경쟁력이라는 성장동력을 얻어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도 활력을 갖게 된다.

즉 FTA로 인하여 산업 가동률이 상승하여 고용이 촉진되고 침체되어 있는 국내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다.

02 FTA 활용 현황

우리나라는 '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11건의 FTA를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49개국과의 자유무역을 경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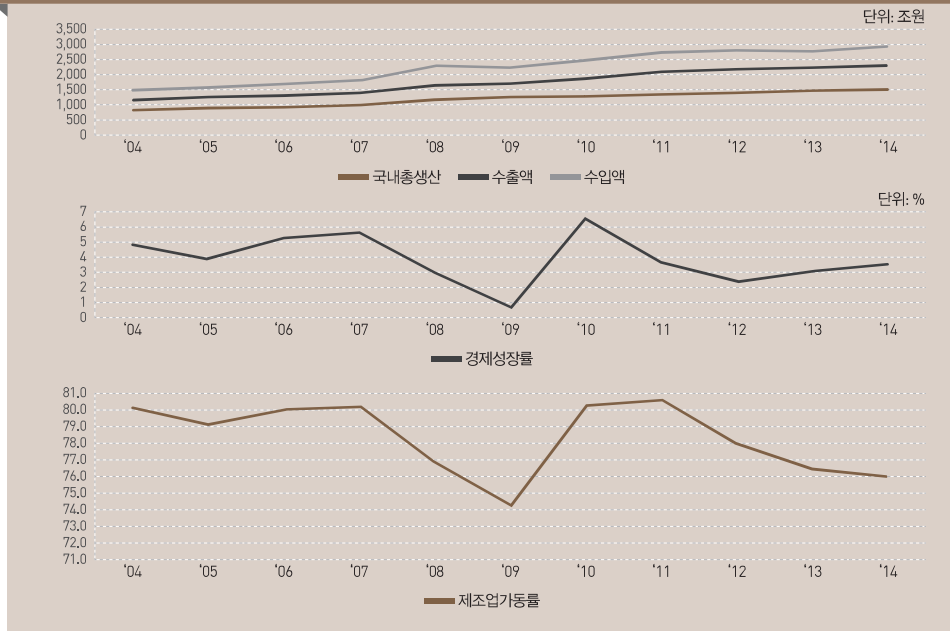
[표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09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12년 유로존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와 EFTA 및 아세안과의 FTA 발효시기인 '06~'07년 그리고 EU와 미국 및 페루와의 FTA 발효시기에는 경제성장률과 제조업가동률이 급속하게 회복됨을 볼 수 있다.²⁾

[표 1] 우리나라 FTA 10년간 주요 경제지표

비고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국내총생산		876	920	966	1,043	1,105	1,152	1,265	1,333	1,378	1,430	1,485
수출액	(조원)	335.5	338.6	359	408.8	551.8	547.6	625.3	742.9	776.1	770.1	752.1
수입액		301.9	316.2	351.5	397	551.9	493.7	585	723	737.6	698.9	672.8
경제성장률	(전년대비, %)	4.9	3.9	5.2	5.5	2.8	0.7	6.5	3.7	2.3	2.9	3.3
제조업가동률		80.0	79.3	79.9	80.1	77.7	74.4	80.3	80.5	78.6	76.5	76.1

2) 다음의 <표 1>은 통계청 'e-나라지표'를 인용하여 가공, 201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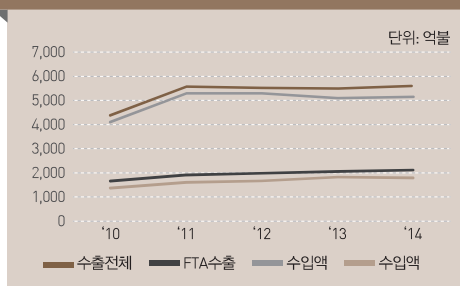
[그림 1] FTA 체결국가와의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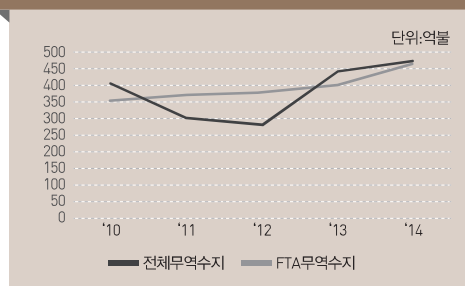
지속적인 수출과 수입의 증가추세는 국내총생산의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와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된 '10년 이후의 우리나라 무역동향을 보면, 지속적으로 수출입실적이 상승하였으며 무역수지 또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표 2]에서와 같이 FTA 협정국의 교역량 증가세가 전체 교역의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흑자의 대부분이 FTA 협정국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³⁾

[표 2] 전체수출입과 FTA협정국과의 수출입 동향 비교



[표 3] 전체무역수지와 FTA협정국과의 무역수지 비교



FTA 협정 국가들과의 교역이 안정적인 신장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교역량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특히 무역수지 흑자는 FTA 협정국과의 무역이 견인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한-중 FTA가 정식 서명되면서 향후 발효 시에는 단일시장으로는 사상 최대인 13억 인구의 소비시장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중국 수출기업 중 FTA 활용 경험이 없는 기업이 77%에 달하고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⁴⁾

03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방안

우리나라 기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인력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침체되어 있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국가경제의 기반이 다져질 수 있으므로 FTA 또한 중소기업지원의 주요한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

특히, 한국이 아시아와 유럽 및 미국을 연결하는 FTA Hub 메커니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면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FTA 체결 확산과 실효성있는 FTA 활용 방법의 보급이다.

FTA 활용 방법의 보급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되어 체계적으로 지원되면 효과적일 것이다.

우선, 중소기업들이 FTA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FTA 정책 안내나 거시경제중심의 홍보 보다 FTA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전환을 위한 설명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다음의 <표 2>와 <표 3>은 관세청 FTA 포털, 통계청(산업부) 통계자료 인용 가공, 2015.8.10.

4) 헤럴드경제, '한-중 FTA의 열쇠, 중소기업', 2015. 6.

FTA 활용에 따른 혜택은 최종적으로 수입자가 세관당국으로부터 받게 되므로 수출자 또는 수출자에게 완제품이나 원재료(중간재)를 제공하는 업체는 당해 수출로 인한 목전의 실익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확대되는 수출물량이나 그에 따른 산업기동률의 상승 등의 FTA 효과에 따라 경제 전반이 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FTA 활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FTA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쉽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나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산업부 및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굴 보급하고 있는 'FTA 비즈니스 모델'은 향후 지원 필요성이 있고 성장가능한 중소기업 아이টে를 타겟으로 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 중소기업 FTA 활용 모델은 수년 간 추진되어 온 중소기업 예산지원 '관세사 FTA 컨설팅 사업'과 지역별 FTA 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쉽게 주변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또한 FTA 협정은 협상단계부터 당사국의 산업에 기초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염두에 두고 특혜대상이나 세율의 조정 및 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상대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서 적극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의 선정이나 지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안정적인 FTA 활용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원산지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FTA 원산지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원산지검증을 수출기업이나 이를 조력할 수 있는 관세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산지검증은 수출기업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 원재료부터 부품 또는 완제품까지의 생산과정 전체에 대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시적인 관세조사 대응 수준을 넘어선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과 연계된 제조업 및 유통업체 전체가 원산지관리를 위한 기업내부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거나 채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FTA-PASS 등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원산지 정보의 관리는 방대한 분량의 원산지 증명자료를 기업내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기업들 간 원산지정보를 소통하도록 하여 단절되지 않은 원산지정보관리도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내부에 원산지관리 전문인력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원산지관리를 고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화된 교육의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양산하여 안정적인 FTA 활용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FTA특혜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진정성이 담보된 원산지증명서를 FTA특혜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관세당국에게 절감된 관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수입통관이후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이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확인되지 못하면 수입자는 대부분의 경우 절감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입자가 입은 손해는 원산지증빙을 못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수출자 등)에게 고스란히 귀책된다.⁵⁾

원산지정보는 원산지가 증명되어야 하는 제품이나 원자재 등의 수급정보, 회계정보, 생산정보 그리고 원산지정보 등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일상적인 내부정보로서 평상시 관리하여야 안정적인 원산지관리가 가능하다.

평소에 원산지정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원산지증명 요청이 있을 때 급히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과 위험을 초래한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원산지실무사⁶⁾를 사내에 양성하거나 채용하도록 하여 원산지관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FTA 원산지관리 대행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다.

5) 이를 위한 대비로써 공격 원산지증명 보험상품의 개발을 고려해볼만 하다.

6) 원산지실무사는 FTA 특혜 무역이 보편화됨에 따라 수출기업 뿐 아니라 관련 기업도 원산지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원산지 증빙서류의 작성 및 원산지정보관리, 원산지정보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중소기업 등에서 단순한 원산지관리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자를 원활히 보급하고자 신설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이다. 올 11월에 첫 시험이 시행된다.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입증책임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또는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동안(FTA 협정국 국내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음) 원산지정보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관책임 또는 입증책임이 있는 수출자나 생산자, 관련 유통업자는 모두 원산지 관리 업무를 신설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⁸⁾

04 미래를 위한 FTA 활용 지원 대책

'15년 6월 기준 WTO에서 발표한 RTA 발효건수는 총 398건인데 반해 '06년 이후 오늘까지 217건이 발효되어 전체의 54%가 최근 10년 내에 발효되었다.⁹⁾

TPP(Trans Pacific Partnership)이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광역 FTA는 TPP의 경우 12개국, RCEP은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향후 광역 FTA의 확산 추세를 감안하면, 현행과 같이 특정한 국가 간 원산지증명을 필요로 하는 FTA 활용 환경에서 역내국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원산지증명 환경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

미래의 FTA 활용에 있어 관건은 FTA가 확산됨에 따라 연계된 협정 간의 특혜세율과 원산지기준 및 산업환경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생산기지 및 수출국을 글로벌하게 구축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양산에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각국은 FTA 저변확대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 교육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FT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원재료나 중간재를 다양한 역내외국에서 조달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시켜 수출할 수 있는 FTA 활용 기획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7) 원산지검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기업내부에 원산지입증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향후에도 반복적인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9)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전세계 지역무역협정 현황', 2015.6

원산지관리사 자격의 목적 중 하나는 FTA 원산지 활용 기획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있다.

따라서 원산지관리사는 원산지증명업무를 넘어서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정보수집을 국제적인 안목으로 확대하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인 FTA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을 위한 전문지식의 학습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FTA가 더욱 확산되고 보편화되면 제조업 말단에서부터 수출기업에까지 단절되지 않은 원산지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관리지식은 특성화고교의 전문교과부터 보편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상식수준으로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여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 관련 학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⁰⁾

동서양을 연결하는 FTA 허브로서, 또한 FTA를 활용한 Global Supply Chain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게 안정적인 원산지증명환경이 제공된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원산지증명과 수출자와 관련 기업 모두가 원산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산지 검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FTA를 통하여 지정학적 가치(FTA Hub)를 활용한 세계적인 경쟁우위산업의 확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양산되는 제품의 합리적인 가격경쟁력으로 교역증진과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FTA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지게 되고, 기업에서 FTA 원산지관리 능력을 키워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FTA 활용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0) 원산지관리는 '1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서 무역물류관리 분야에 새로이 원산지관리가 유통관리 및 수출입관리와 더불어 채택 분류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